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지역연합신문 5면

강북구 교육경비 자율성 확대키로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발의

강북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학교의 재량이 넓어질 전망이다.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비례)은 지난 9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해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을 신설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정을 투명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다.

강선경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 제 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시사프리 4면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9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서울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해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안) 제2조의 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를 신설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했고,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 교육에 관해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



는 사람 4명 이내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정을 보다 투명하도록 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선경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조례 개정안 발의

강선경 의원,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등 내용 포함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하여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의 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를 신설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정을 보다 투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선경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발의

강선경 의원,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등 포함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 상정 통과돼 12월15일 열리는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강선경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가 제2조 제4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하여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제2조의 2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했다"라며 "또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정을 보다 투명하도록 했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례 내용과 관련한 의견



강선경 의원이 9일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을 나눈 뒤 최종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선경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